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2011 - 51 - 174호 (사건번호 : 201106조사019)

안 건 명 SK텔레콤(주)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SK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하성민

의결연월일 2011. 9. 19.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i)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ii)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iii)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시 주 또는 월 단위로 제출하고, (iv)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검증하고, 허위 입력시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v) 단말기 보조금 지급유형 중 가입비·할부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및 위약금 대납 등에 대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금 액 : 6,860,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단말기 보조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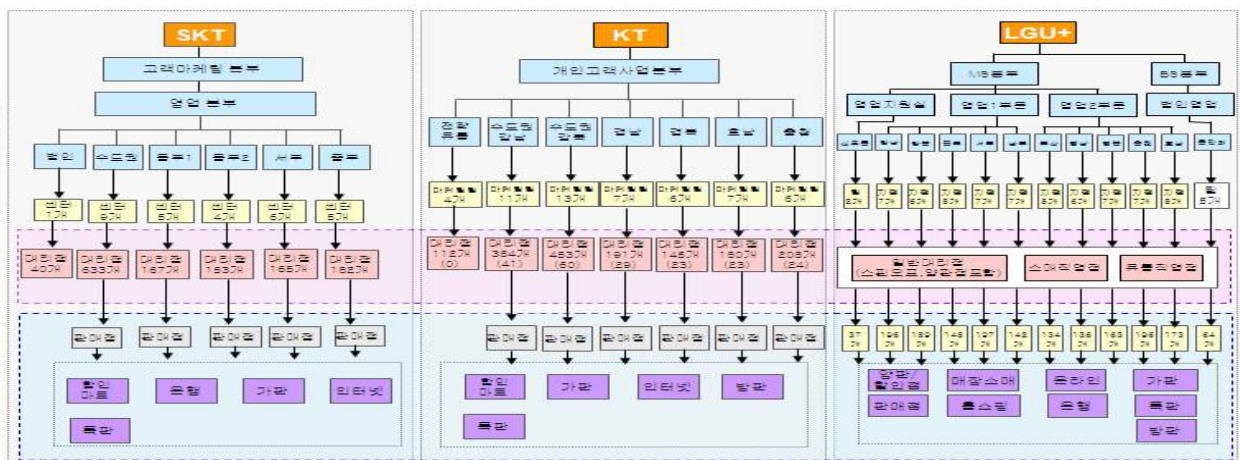
< ① 단말기 유통구조 >

이통 3사 모두 수도권/경북/경남/호남/충청 단위로 지역본부를 두고, 지역본부 산하 마케팅팀이 대리점(직영점 포함, 이하 같음)을 직접 관리하며,

대리점 또는 대리점과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개통과 동시에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통 3사 유통망 현황 비교 >

구분	SKT(이하 “피심인”)	KT	LGU+
본부	6본부 : 영업본부, 수도권, 부산, 대구, 서부(광주), 중부(대전), 기업사업본부/SMB사업본부 (법인)	7마케팅단 : 수도권강남/강북, 경남, 경북, 호남, 충청, 전략유통	4부문 19영업담당: 영업지원실-신유통 1부문-강남, 강북, 동부, 서부, 남부 2부문-부산, 경남, 경북, 충청, 호남 법인-융합 외 8개
지점	○○개	○○개	○○개
대리점	○○○○개	○○○○개	○○○○개
판매점	약 ○○○○○개	약 ○○○○○개	약 ○○○○○개



주: 소매·대리점 적정판매 도메·대리점 판매를 제외한 모든 판매(판매점, 가판, 인터넷판매 등)
자료: 사업자 제출자료(2006년 7월 말 기준)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11.8월 기준)

피심인은 계열관계에 있는 SK네트웍스(이하 “SKN”)를 통해, KT와 LGU+의 경우 제조사와 직접 모델사양·출고가·출고량 등을 협의하여 단말기를 유통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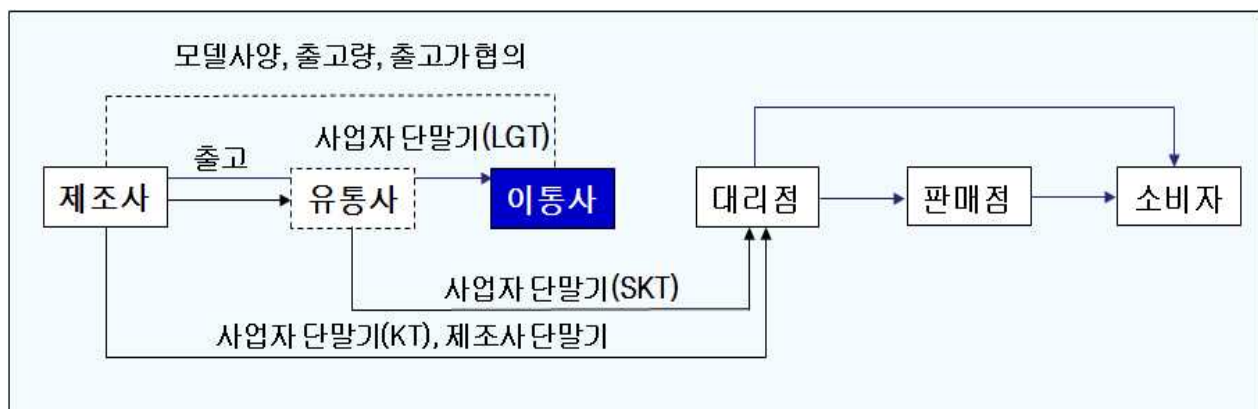
피심인의 경우, SKN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심인의 지역본부~대리점에서 제조사와 직접 협의하여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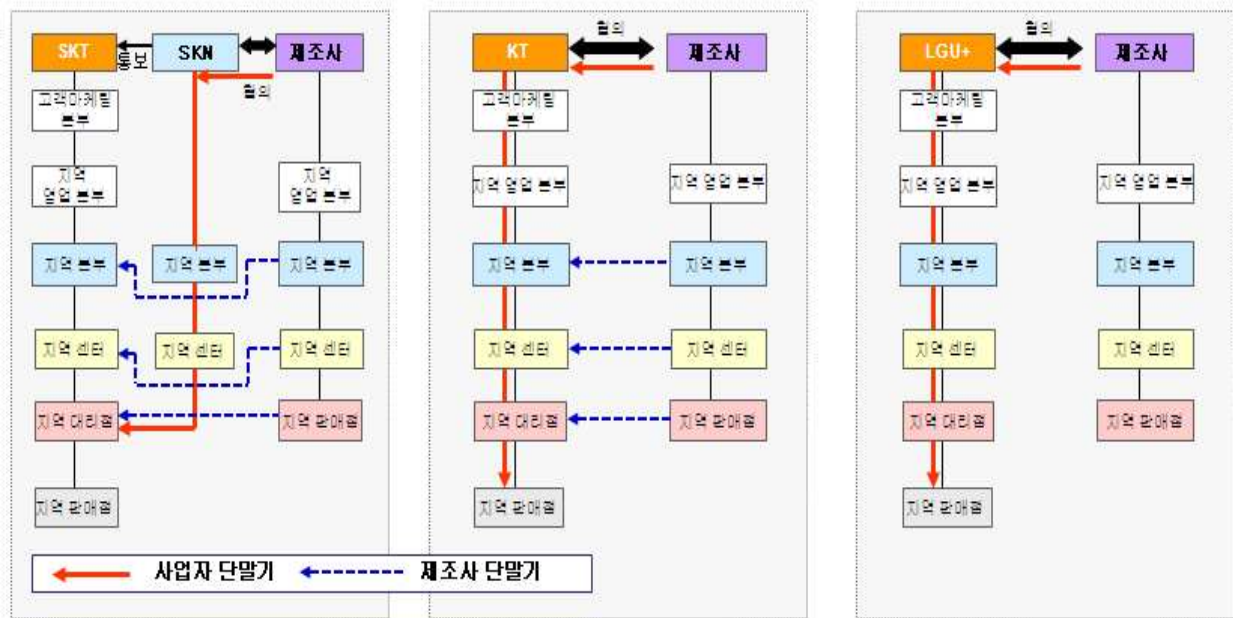
※ 이통사 본사(또는 SKN)가 제조사와 직접 협의하여 구매하는 단말기를 “사업자 단말기”, 지역본부~대리점에서 제조사와 직접 협의하여 구매하는 단말기를 “제조사 단말기”라고 하는데, 피심인의 경우 현재 유통 중인 단말기 중 제조사 단말기가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KT의 경우, 제조사와의 협의를 거쳐 단말기를 구매하여 대리점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조사와 대리점간의 별도 협의를 통해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도 있다.

LGU+의 경우, 제조사와 협의 후 단말기를 본사에서 직접 공급받아 재차 대리점에 공급하고, LGU+의 본부~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수 없다.

〈 이통 3사 단말기 유통구조 비교 〉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11.8월 기준)

< ② 단말기 보조금의 정의 >

단말기 보조금이란 ① 이동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 보조금”과 ②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출고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약정외 보조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동전화 서비스는 단말기와 연계되어 있어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기종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을 인하해 주는 것보다 특정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므로 단말기 보조금이 주로 가입자 유치수단으로 활용된다.

한편,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단말기가 표준화된 시장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단말기 보조금 대신 현금·사은품 등 경품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약정 보조금은 약정기간(12~24개월)·지급시기(일시/월별 분할) 또는 단말기에 따라 1~22만원(SKTEL 기준)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업보고서상 “통신 단말장치 구입 지원 비용”으로 분류된다.

〈 이통 3사 이용약관상 약정 보조금 관련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보조금 지급	○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와 사업자간 개별계약에 따름 ○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음
약정 기간	○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 설정
위약금 납부	○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위약금 납부 ※ 위약금=약정금액×{(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 SKT의 약정 보조금 종류 〉

- ① T할부지원 : 이용자가 특정 단말기 구입시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을 계약하고 청구요금에서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할인받는 제도
- ② T기본약정 : 이용자가 특정 단말기 구입시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을 계약하고 일정액을 즉시 할인받는 제도

약정外 보조금은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수수료 등을 轉用하여 지급되고, 이들 財源은 영업보고서상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제외)” 및 “가입자관리비용”으로 분류된다.

※ 약정外 보조금의 세부 지급유형으로는 단말기 판매시 즉석에서 저가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할인판매”, 가입비·채권 보전료·충전기 비용 등을 면제해 주는 “가입비 면제”, 출고가로 판매하되 그 차액을 가입자에게 입금시켜 주는 “환불(Payback)” 등이 있고, 할인판매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 ③ 약정外 보조금의 財源 〉

약정外 보조금의 財源은 ①판매 장려금(이통사→대리점), ②약정 수수료(이통사→대리점) 및 ③제조사 장려금(제조사→대리점)으로 구성된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가 영업 정책에서 정한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rebate)로서,

※ 영업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매월 수회~수십회 배포되고, 본사→지역본부→대리점의 단계를 거치면서 개별 정책이 가미될 수 있음

재고물량 소진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특정 단말기(비인기 단말기 또는 인기·최신 단말기)를 전략 단말기로 설정, 더 많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전략 단말기 정책”이 대표적이다.

〈 전략 단말기 정책 예시 〉



2011. 6.21

제목 : [판매 6-11] 본부 정책 변경

1. [본부] 전략단말기 정책 변경

가. T 기본약정 정책 (단위: 천원/VAT 포함)

모델명	010		MNP		기변	
	SKT	제조사	SKT	제조사	SKT	제조사
SCH-W930	-10	-20	-10	-20		
SHW-A130S		-20		-20		
SHW-A200S		-20	-10	-20		
SHW-A280S	-10	-10	-10	-10		
LG-SU410	-10	-20	-10	-20		

나. 지급 채널 : B2C, 소매, 대형(팀)채널, M 채널

약정 수수료는 이통사가 “서비스” 가입실적 또는 위탁 업무의 처리 대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서비스 개통시 지급되는 “개통 수수료”나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 모집시 해당 가입자의 월 요금 수납액의 6%를 48개월간 지급받게 되는 “가입고객관리수수료”가 대표적이다.

〈 약정 수수료 종류(SKT) 〉

구분	개통 수수료	가입고객관리수수료	단말기 기변 수수료	기타 수수료(예시)
조건·금액	건당 20,000원	월 요금 수납액의 6%(48개월 지급)	월 요금 수납액의 5%(48개월 지급)	요금수납 수수료 : 수납액의 1.2% 자동이체 수수료 : 2,000원

제조사 장려금은 제조사가 대리점에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리베이트로서,

협약의 주체에 따라 “기본정책”(제조사 본사-이통사 본사)·“계약대리점 정책”(제조사-특정 대리점)으로, 제공 방식에 따라 종량제·정액제로 구분된다.

※ (종량제) 0~10건 : 건당 2만원 / 11~100건 : 건당 3만원, (정액제) 100건 이상 500만원

대리점은 이러한 財源 및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 판매가를 “단가표” 형식으로 판매점에 배포하며, 판매점은 고객과 흥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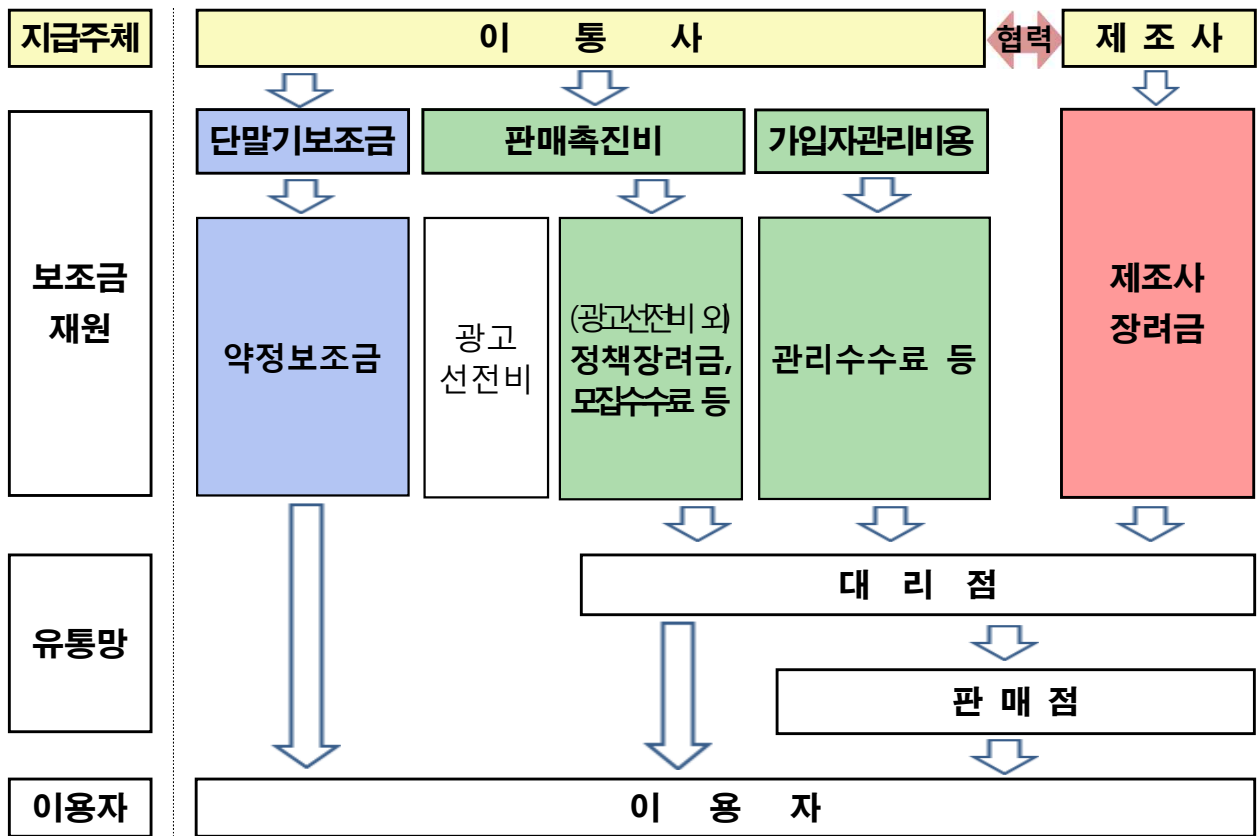
< 대리점 단가표(예시) >

SKT		*010 정책 *일반MF 정책		의무약정신규(24개월기준)			약정 기변 (일반 24개월 기준 현)	
제조사	모델명	닉네임	출고가	010신규	번호이동		단말기 반납시	
					KT	LGU+		
팬택	IM-A650S	베가	784,300	790,000	790,000	790,000	790,000	
팬택	IM-A690S	미라크	726,000	590,000	590,000	590,000	726,000	
팬택	IM-S550S	젤빈드	572,000	0	0	0	0	
모토로라	A853	드로이드	594,000	0	0	0	0	
소니에릭슨	X10 MINI**★	X10 미니	462,000	0	0	0	230,000	
소니에릭슨	X10 MINI(PRO)**★	X10 미니 프로	495,000	0	0	0	290,000	
소니에릭슨	ARC	ARC	803,000	803,000	803,000	803,000	803,000	
소니에릭슨	X10	엑스페리아	589,60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HTC	Touch HD2	HD2	814,000	690,000	690,000	690,000	750,000	
HTC	HTC Desire	디자이너	569,800	250,000	250,000	250,000	400,000	

1. 공지 사항(약정 변동 신규)

SKT	가입비 연계	010 신규 가입비 연계 모델 : SU410 / X10 MINI / A175S / SU550 / PRO / A210S / A220S / A240S / S8260 / SH860 / B900 / SV400 / W930 137기 MNP 번호이동 가입비 연계 모델 : SU410 / S8260 / X10 MINI / A220S / B900 / A175S / SU550 / PRO / SH860 / A210S / SV400 / W930 127기중 W930 신규 가입비 연계 추가, W930 / A175S 이변주이후 다음주 정책 폐지 무조건 소진 요망, SU780 / SV850 신제품 출시
	정책 중절 모델	신규 / MNP 가입비 연계 모든 모델 유심 연계 폐지, X10 MINI / PRO 12개월 약정 판매 연장, SV400/SU410/S8260/B900/W930/A175S/A210S/MINI/
	정책 공지사항	보상 기변 SCH-W900/SV390/IM-S550S/LG-SU920/ C33D / A853 단종으로 교환이 불가합니다. 바로 제조사 A/S 센터로 가야함, 판매시 반드시 안내 요망 4월 소진모델 3기종은 나군 보조금 4만원(24개월 기준)과 동일 운영됩니다. 따라서 개월수 따른 보조금 상이로 단가또한 다릅니다.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1 M180S 기존 단말기 미반납, 아이패드 2는 기존 단말기 반납 조건 미반납시 55,000원 추가 입금
	기타	아이패드 2는 태블릿 PC 합부만 판매가능하며 24개월 약정에 태블릿 PC 요금제로만 판매 가능, 단가표 별도 참조

〈 단말기 보조금 財源 및 보조금 창출경로 〉



※ KT 및 LGU+의 제조사 장려금 중 일부(출고가 대비 납품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통사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는 영업보고서상 판매촉진비에 포함됨

나.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 ①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7) 〉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 < 관련 조항 >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조금 지급범위 확대('06.3.27 ~ '08.3.27) >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 관련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예시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가 가능하다.

'10.9.24일 방통위는 SKT 등 이통 3사가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³⁾하고,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하였다.

다. '11년 상반기 이동전화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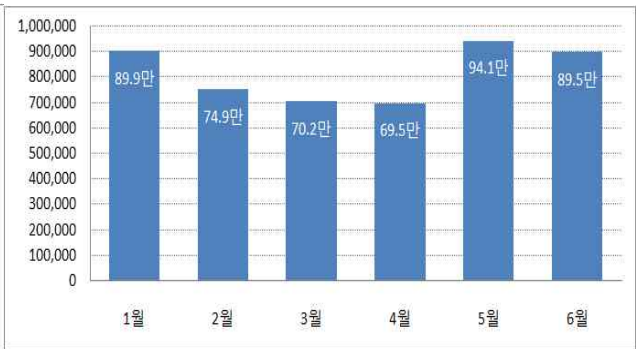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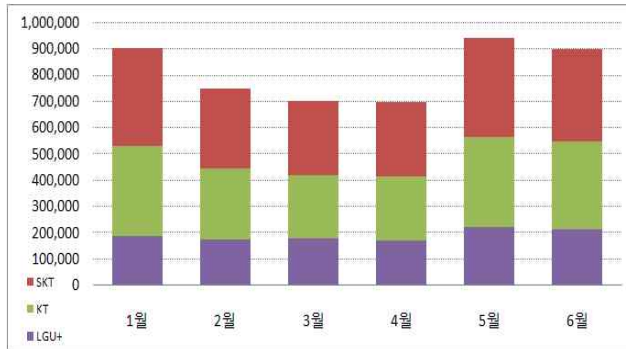
〈 ①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이동전화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는, 1월 89.9만건에서 4월 69.5만건까지 지속 하락하였으나 5월 들어 94.1만건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월별) 〉

(단위 : 건)

	SKT	KT	LGU+	합계
1월	368,996	340,519	190,058	899,573
2월	305,794	267,520	175,884	749,198
3월	282,621	239,099	180,576	702,296
4월	281,453	242,186	171,809	695,448
5월	378,429	339,363	223,442	941,234
6월	348,006	332,283	215,134	895,423



특히, 4월4주(24~30일) 17.8만건에서 5월1주(1~7일) 22.5만건으로 21% 상승하는 등 4월4주를 기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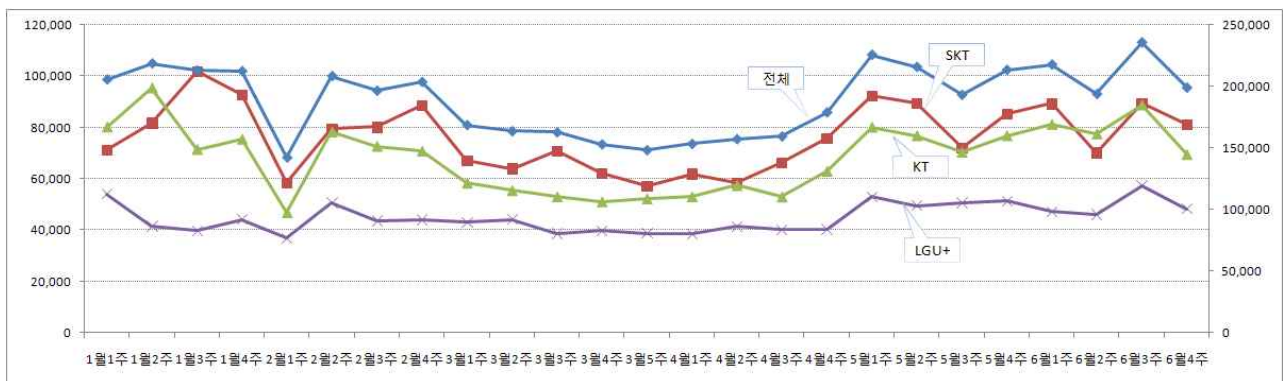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주별) 〉

(단위 : 건)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3월 1주
SKT	71,334	81,781	101,818	92,748	58,610	79,583	80,205	88,715	67,135
K T	80,258	95,394	71,557	75,532	46,965	78,289	72,758	70,882	58,471
LGU+	54,073	41,457	39,609	44,150	36,800	50,573	43,558	43,964	43,092
합계	205,665	218,632	212,984	212,430	142,375	208,445	196,521	203,561	168,698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3월 5주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5월 1주
SKT	64,004	70,958	62,249	57,314	61,969	58,359	66,367	75,715	92,504
K T	55,545	53,169	51,215	52,392	53,171	57,559	53,096	63,071	80,174
LGU+	44,108	38,661	39,592	38,684	38,349	41,379	40,071	40,207	52,981
합계	163,657	162,788	153,056	148,390	153,489	157,297	159,534	178,993	225,659

	5월 2주	5월 3주	5월 4주	6월 1주	6월 2주	6월 3주	6월 4주	평균
SKT	89,421	72,122	85,279	89,286	70,249	89,519	81,173	75,553
K T	76,859	70,433	76,867	81,279	77,553	88,810	69,531	67,500
LGU+	49,543	50,673	51,322	47,204	46,069	57,392	48,290	44,179
합계	215,823	193,228	213,468	217,769	193,871	235,721	198,994	187,232



이는 4.29일 출시된 갤럭시 S2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갤럭시 S2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4.29~5.25일) >

(단위 : 건)

구분	갤럭시S2 판매량	전체 단말기 판매량	스마트 폰 판매량	전체 단말기 중 스마트폰 비중	전체 단말기 중 갤럭시S2 비중	스마트폰 중 갤럭시S2 비중
SKT	○○○,○○○	1,268,854	○○○,○○○	○○.○%	○○.○%	○○.○%
K T	○○○,○○○	719,270	○○○,○○○	○○.○%	○○.○%	○○.○%
LGU+	○○○,○○	311,492	○○○,○○○	○○.○%	○○.○%	○○.○%
합계	609,637	2,299,616	1,606,275	69.8%	26.5%	38.0%

한편,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순증은 KT가 3.3만건으로 순증을 기록한 반면, SKT는 -3.1만건, LGU+는 -0.2만건으로 순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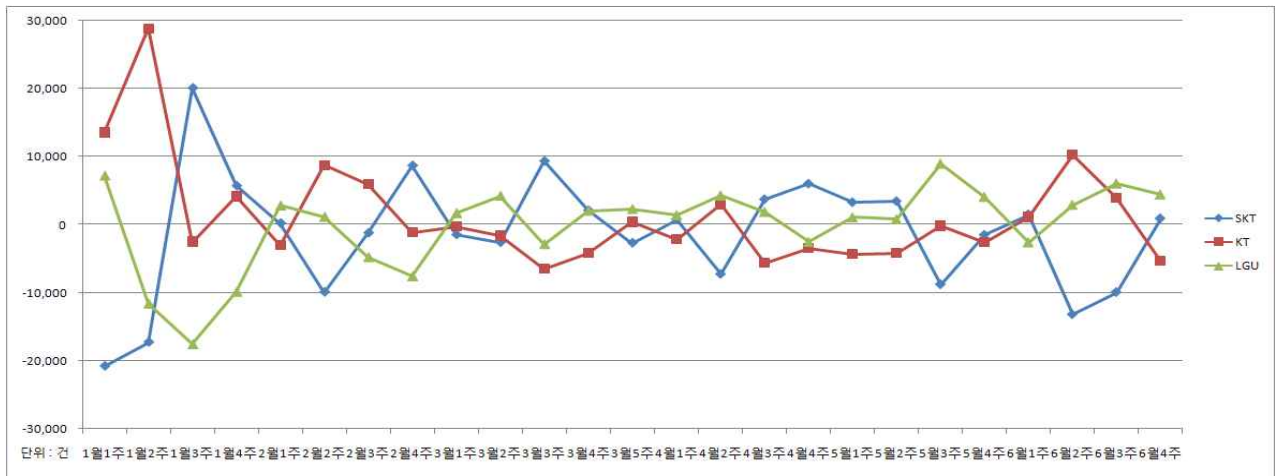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순증 추이(주별) >

(단위 : 건)

주	1월1주	1월2주	1월3주	1월4주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SKT	-20,795	-17,270	20,067	5,701	198	-9,914	-1,216	8,669	-1,479
K T	13,604	28,855	-2,497	4,168	-3,001	8,752	5,982	-1,084	-213
LGU+	7,191	-11,585	-17,570	-9,869	2,803	1,162	-4,766	-7,585	1,692
순증1위	K T	K T	SKT	SKT	LGU+	K T	K T	SKT	LGU+
순증3위	SKT	SKT	LGU+	LGU+	K T	SKT	LGU+	LGU+	SKT

주	3월2주	3월3주	3월4주	3월5주	4월1주	4월2주	4월3주	4월4주	5월1주
SKT	-2,615	9,333	2,091	-2,690	779	-7,278	3,710	5,998	3,259
K T	-1,618	-6,454	-4,129	407	-2,153	3,013	-5,569	-3,465	-4,313
LGU+	4,233	-2,879	2,038	2,283	1,374	4,265	1,859	-2,533	1,054
순증1위	LGU+	SKT	SKT	LGU+	LGU+	LGU+	SKT	SKT	SKT
순증3위	SKT	K T	K T	SKT	K T	SKT	K T	K T	K T

주	5월2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6월3주	6월4주	총 합계
SKT	3,437	-8,792	-1,517	1,484	-13,198	-9,942	892	-31,088
K T	-4,203	-153	-2,544	1,125	10,298	3,914	-5,309	33,413
LGU+	766	8,945	4,061	-2,609	2,900	6,028	4,417	-2,325
순증1위	SKT	LGU+	LGU+	SKT	K T	LGU+	LGU+	K T
순증3위	K T	SKT	K T	LGU+	SKT	SKT	KT	SKT



SKT는 4월까지 월 상반기(1~2주)에는 순감을 보이다가 월 하반기에 이를 회복하는 양상이 반복되었으나, 5월부터는 반대 양상을 보였고,

〈 SKT의 월 상반기/하반기 번호이동 순증 비교 〉

(단위 : 건)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 상반기	-38,065	-9,716	-4,094	-6,499	6,696	-11,714
월 하반기	25,768	7,453	8,734	9,708	-10,309	-9,050

KT는 1/2월에는 우위를 보인 반면(42,772건 순증), 3월 이후 대부분 週에서 순감을 기록(7,964건 순감)하였으며,

LGU+는 1/2월 대부분 週에서 순감을 보였으나(40,219건 순감), 3월 이후 대부분 순증을 기록(27,449건 순증)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1~3월)는 KT(4.4만건)→SKT(-1.0만건)→LGU+(-3.3만건) 순으로 KT, 2분기(4~6월)는 LGU+(3.4만건)→KT(-1.3만건)→SKT(-2.1만건) 순으로 LGU+의 실적이 두드러진다.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순증 추이(월별)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1분기	4월	5월	6월	2분기
SKT	-11,397	-2,237	2,638	-10,996	4,285	-1,804	-23,602	-21,121
K T	45,040	9,119	-9,726	44,433	-9,835	-9,834	6,139	-13,530
LGU+	-33,643	-6,882	7,088	-33,437	5,550	11,638	17,463	34,651

< ② 마케팅비 추이 >

'11년 상반기 이통 3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 (18.7~20.0%)을 제외하고는 방통위가 연초 제시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 21.4%(마케팅비는 ○○○○) → ○○○ 23.6%(○○○○○) → ○○○ 23.9%(○○○○○) 순이며, 유·무선간 조정금액(125억원/월)*을 반영하지 않으면 ○○○ 23.4% → ○○○ 23.6% → ○○○ 28.3% 순으로 나타났고,

※ Wibro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무선을 겸영하는 KT와 LGU+에 대해서는 '10년에는 1,000억원, '11년에는 1,500억원 범위 내에서 유·무선간 조정을 허용

마케팅비 지출 1위 횟수는 ○○○ 4회(1~4월), ○○○ 2회(5·6월)로 나타났다.

< '11년 상반기 이통 3사별 이동통신 마케팅비 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SKT	매출액							
	마케팅비							
	마케팅비율							
	조정 비율							
K T	매출액							
	마케팅비							
	마케팅비율							
	조정 비율							
LGU+	매출액							
	마케팅비							
	마케팅비율							
	조정 비율							
계	매출액	19,163	18,190	19,513	19,165	19,961	19,540	115,532
	마케팅비	4,850	4,871	4,623	4,297	4,823	4,530	27,994
	마케팅비율	25.3%	26.8%	23.7%	22.4%	24.2%	23.2%	24.2%
	조정 비율	24.0%	25.4%	22.4%	21.1%	22.9%	21.9%	22.9%

〈 ③ '11년 상반기 시장점유율 변화 〉

'11.6월 기준 SKT의 시장 점유율은 '10년 대비 상승(50.63%→50.76%)한 반면, KT와 LGU+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KT 31.60%→31.49%, LGU+ 17.77%→17.75%)하였고,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최소 69.5만건(4월)·최대 94.1만건(5월)에 이르는 등 과열상태가 지속되었으나, 전체 가입자수는 '10년말 대비 1.93% 성장하는데 그쳤다('10년말 50,768천명 → '11.6월말 51,750천명).

〈 '11년 상반기 이동전화 시장 가입점유율 변화 〉

(단위 : 천명)

구분	'10.12월말		'11.3월말		'11.6월말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SKT	25,705	50.63%	25,989	50.60%	26,269	50.76%
K T	16,041	31.60%	16,299	31.73%	16,296	31.49%
LGU+	9,022	17.77%	9,077	17.67%	9,185	17.75%
합계	50,768	100.00%	51,365	100.00%	51,750	100.00%

라. 사전점검 결과(시장 모니터링 지표)

4월3주(4.17~23일)부터 6월2주(6.5~11일)까지 8주간의 시장 모니터링 지표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6.21일 이통 3사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 시장 모니터링 지표 세부내용 〉

① 개요

- 주 단위로 시장과열 판단(1단계) → 과열 시기에 사업자별로 벌점 부과(2단계) → 과열 지속기간 및 누적 벌점에 따라 경고, 제재 등 단계적 조치(3단계)

② 1단계 : 과열 판단

- (원칙 : 번호이동 규모) 해당週の 일평균 번호이동이 2.2만건을 초과하면 “과열”로 판단
- 2.2만건은 최근 3년('08~'10년) 일평균 번호이동(22,812건)을 참조

- (예외① : 하락 추세) 2주 연속 일평균 번호이동이 하락하고, 2.5만건 이하면 “안정”으로 판단
 - 사업자의 시장안정 노력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과 '10년 일평균 번호이동 실적(24,651건)을 고려
- (예외② : 단말기·서비스 신규 출시) 높은 번호이동 실적이 새로운 단말기나 서비스 출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안정”으로 판단
 - 혁신적인 서비스 및 이와 연계된 단말기 경쟁은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다만, 사업자의 편법적 마케팅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소명을 제출받고, 최대 3주(출시週 포함)만 예외 인정

③ 2단계 : 별점 부과

- “과열”시 週단위로 최대 100점의 별점을 부과
 - 주요 지표인 ①보조금 모니터링에 40점, ②표본조사에 20점을 각각 배분하고,
 - 보조 지표인 ③번호이동 순증에 10점, ④마케팅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에 10점, ⑤인당 확보비에 5점, ⑥판매점 단가표에 5점, ⑦불·편법 영업 자율 규제 실적에 10점을 배분하여 별점을 조정

④ 3단계 : 단계적 조치

- (원칙) 과열이 지속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 조치를 시행
 - 과열이 2주 지속되면 마케팅 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경고하고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 과열이 3주 지속되면 그 정도에 따라 ①이통 3사의 본사·유통망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 ②최초 과열시점(1주)부터 3주차까지 누적 별점으로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여 선별 조사에 착수하고,
 - 조사 중 누적 별점, 조사 전후의 각종 보조지표(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인당 확보비 등)를 제재시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로 고려
- (예외) 누적 별점은 높지만 동 기간 번호이동 순증 등을 볼 때 주도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조사를 유보하거나 대상을 변경

- 아울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표본조사나 실태점검을 방해하는 사업자는 누적 벌점과 무관하게 즉시 조사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최소 2.2만건(4월3주)·최대 3.2만건(5월1주)로 8주 모두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2.2만건을 초과하나,

5월1주와 2주(5.1~14일)는 새로운 단말기 출시(SKT·KT 4.29일/LGU+ 5.1일 갤럭시 S2 출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므로 6주(4월3·4주, 5월3주~6월2주)가 과열에 해당하고,

5월3주부터 6월2주까지 4주 연속 과열이 지속되었으므로 지표상 사실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다.

< 4월3주~6월2주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단위 : 건)

구분	4월3주	4월4주	5월1주	5월2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평균
전체	22,791	25,570	32,237	30,832	27,604	30,495	31,110	27,696	28,542
SKT	9,481	10,816	13,215	12,774	10,303	12,183	12,755	10,036	11,445
KT	7,585	9,010	11,453	10,980	10,062	10,981	11,611	11,079	10,345
LGU+	5,724	5,744	7,569	7,078	7,239	7,332	6,743	6,581	6,751

이때 과열에 해당하는 4월3·4주 및 5월3주~6월2주 누적 벌점은 ○○○ (283점) → ○○○ (260점) → ○○○ (237점) 순으로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SKT의 과열기간(4월34주 및 5월3주~6월2주) 벌점 >

구분	4월3주	4월4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보조금 모니터링	○○점	○○점	○○점	○○점	○○점	○○점
번호이동 순증	○점	○점	○점	○점	○점	○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점	○점	○점	○점	○점	○점
샘플조사	○○점	○○점	○○점	-	-	-
합계	○○점	○○점	○○점	○○점	○○점	○○점

다만, 위 기간 3사 모두 보조금 모니터링이나 표본조사에서 파악된 평균 보조금이 27만원을 항상 초과하는 등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3사 모두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마.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6,269천명으로 전체 시장의 50.76%,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매출액은 123,260원으로 53.91%를 점유하고 있다('10.12월말 기준).

〈 이동전화 시장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SKT	KT	LGU+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26,269 (50.76)	16,296 (31.49)	9,185 (17.75)	51,750 (100.0)
매 출 액 (점유율, %)	123,260 (53.91)	70,301 (30.75)	35,064 (15.36)	228,625 (100.0)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 제출자료(2010년 영업보고서)

2. 사실조사 결과

가. 현장조사 개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6.21일부터 7.31일까지 피심인의 본사·전국 주요권역의 지점 및 대리점 등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11년 상반기(이하 "조사대상 기간") 가입건(기기변경 포함. 이하 같음)을 대상으로 영업정책·보조금 수준 및 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전산자료·이메일 및 내부 문건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 차별적 보조금 책정

< ① 영업정책 배포 (이통사 → 대리점) >

피심인은 '11년 상반기 단말기·연령대·판매수량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정된 각종 영업정책을 일선 유통망에 배포하였다.

영업정책은 매월 1일 유통망에 서면으로 배포되나, 세부 정책 및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수차례 변동되고, 이메일·SMS 및 개통전산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망에 전파되었다.

< 영업정책 예시 >

		2011. 6. 14
제목 : 6 월 판매정책 (0615)		
1. <u>피쳐폰 Co-work 정책 (부가세 포함 금액, 단위:천원)</u>		
모델	인센티브	
	010	MNP
SCH-W820	330	330
SCH-W890	380	380
LG-SB260	130	130
LG-SH860	20	20
LG-SU130	600	600
IM-U585S	160	160
IM-U700S	70	70
SK-900	120	120
가. <u>적용채널</u> : F-Zone 제외한 전 채널		
나. <u>적용대상</u> : 신규(T 기본약정, T 할부지원) - <u>스페셜할인</u> 미지급		
다. <u>적용기간</u> : 6 월 11 일~		

< ② 단가표 작성 및 배포 (대리점 → 판매점) >

피심인의 영업정책을 바탕으로 대리점은 먼저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윤을 고려하여 단말기별로 적정 판매단가를 산정하였고,

이후 대리점은 단말기별 적정 판매가와 마진이 기재된 “단가표”를 작성하여 판매점에 배포하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초로 고객과 개별 흥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 대리점 단가표 예시 〉

< 내리침 단가표 예시 >

0901-

SKT		요금제 종류		통신요금 (부가세 포함)		방송 요금 (부가세 포함)		방송 요금 (부가세 포함)		통신요금	방송요금	통신요금	방송요금		
구분	종류	구분	종류	010	011	012	013	014	015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0															

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 (이통사대리점·판매점 → 이용자)

〈 ① 조사대상 건수 〉

조사대상 기간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번호이동/일반 신규 가입 118,655건(번호이동 신규 49,437건, 일반 신규 69,218건), 기기변경 82,414건 등 총 201,069건을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신규	18,831	22,259	21,921	20,370	18,363	16,911	118,655
번호이동	8,180	8,753	8,912	7,980	8,071	7,541	49,437
일반	10,651	13,506	13,009	12,390	10,292	9,370	69,218
기기변경	11,003	10,558	16,286	13,873	15,374	15,320	82,414
총합계	29,834	32,817	38,207	34,243	33,737	32,231	201,069

이때, 단말기 구매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자나 선불요금제 가입건, 일반 단말기가 아닌 태블릿 PC나 무선인터넷 모뎀 개통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② 시기별 보조금 수준 〉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입건당 지급된 보조금 평균액은 27.2만원,

동 기간 판매된 단말기는 총 155종으로 평균 출고가는 71.7만원,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이하 “보조율”)은 평균 38%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 31.1만원(보조율 39.2%) → 3월 27.2만원(35.2%) → 6월 23만원(29.0%)으로 평균 보조금 및 보조율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 보조금/보조율 변동 추이(월별) 〉

(단위 :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출고가	794,868	815,253	774,597	780,919	795,814	794,411	791,974
보조금	311,654	304,677	272,348	269,468	251,341	230,239	272,691
보조율	39.2%	37.4%	35.2%	34.5%	31.6%	29.0%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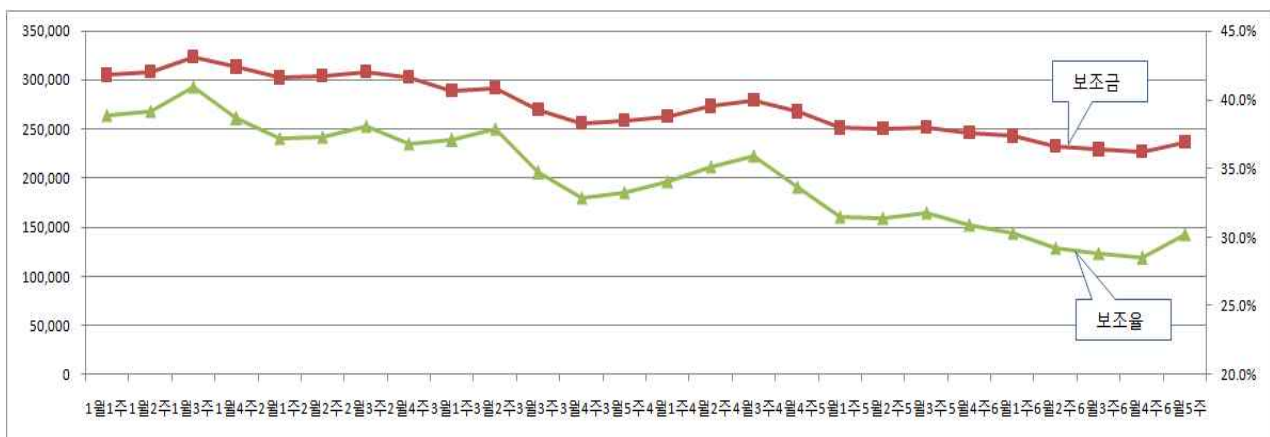
주별로 살펴보면 1월3주가 32.3만원·40.9%로 가장 높은 보조금 및 보조율을 보인 반면, 사실조사가 개시된 6월4주는 22.6만원·28.5%로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보조금/보조율 변동 추이(주별) >

(단위 : 원)

구분	1월1주	1월2주	1월3주	1월4주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3월2주	3월3주	3월4주	3월5주
출고가	784,459	786,875	791,481	810,208	812,314	815,017	809,255	823,089	780,017	769,756	777,386	779,231	776,961
보조금	304,672	308,078	323,735	313,039	302,011	303,669	308,165	302,809	289,071	291,534	269,611	255,833	258,219
보조율	38.8%	39.2%	40.9%	38.6%	37.2%	37.3%	38.1%	36.8%	37.1%	37.9%	34.7%	32.8%	33.2%

구분	4월1주	4월2주	4월3주	4월4주	5월1주	5월2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6월3주	6월4주	6월5주
출고가	771,368	776,781	777,784	794,747	798,419	797,802	790,477	796,723	802,282	795,115	794,430	796,420	781,622
보조금	262,624	272,906	279,101	267,396	251,235	250,437	251,441	246,236	242,929	232,253	228,792	226,707	236,302
보조율	34.0%	35.1%	35.9%	33.6%	31.5%	31.4%	31.8%	30.9%	30.3%	29.2%	28.8%	28.5%	30.2%



〈 ③ 가입형태별 보조금 수준 〉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0만원인 반면, 기기 변경 가입자는 23.2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6.8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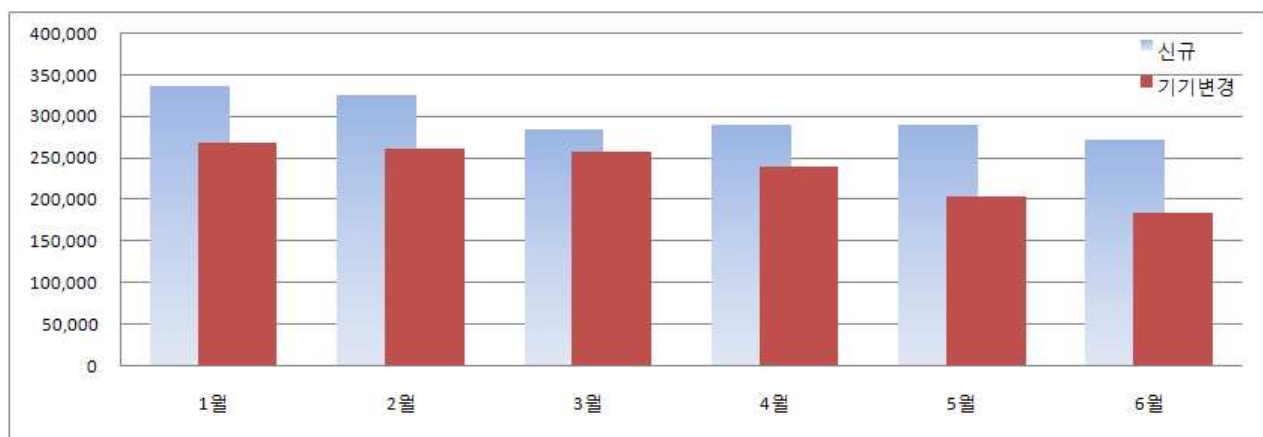
월별로 살펴보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었던 3~4월은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간 보조금 차이가 2.6만원·5.1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시장 과열이 심화되었던 5~6월은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간 보조금 차이가 8.6만원·8.7만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 변동 추이(월별) 〉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신규 가입자	336,991	325,904	283,836	290,237	290,652	271,922	300,619
기기변경 가입자	268,290	259,925	256,885	238,971	204,388	184,227	232,482
보조금 차이	68,702	65,980	26,951	51,267	86,264	87,695	68,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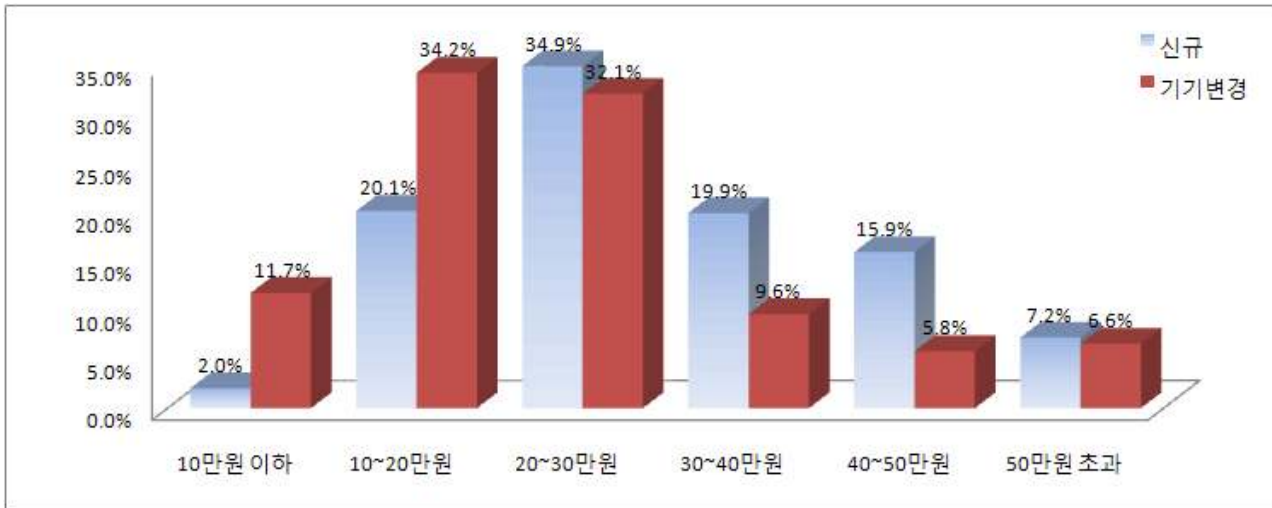


보조금 수준별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신규 가입자는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43%를 차지한 반면, 기기변경은 20만원 이하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45.9%를 차지하였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점유율)	2,395 (2.0%)	23,852 (20.1%)	41,373 (34.9%)	23,611 (19.9%)	18,884 (15.9%)	8,540 (7.2%)
기기변경 (점유율)	9,678 (11.7%)	28,178 (34.2%)	26,426 (32.1%)	7,913 (9.6%)	4,790 (5.8%)	5,429 (6.6%)



〈 ④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보조금 수준 〉

피싱인의 단말기 판매방식은 약정 보조금 지급시기 및 정도에 따라

① 단말기 판매시점에 약정 보조금을 일시불 지급하는 “T기본약정”, ② 매월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T할부지원”, ③ 약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대신 올인원55 등 특정 요금제 가입자에게 요금을 추가 할인해 주는 “스페셜할인”으로 구분된다.

조사대상 기간 중 판매비중은 스페셜할인이 106,618건으로 53.0%, T기본약정이 78,108건으로 38.9%를 차지하여 스페셜할인과 T기본약정의 비중이 91%를 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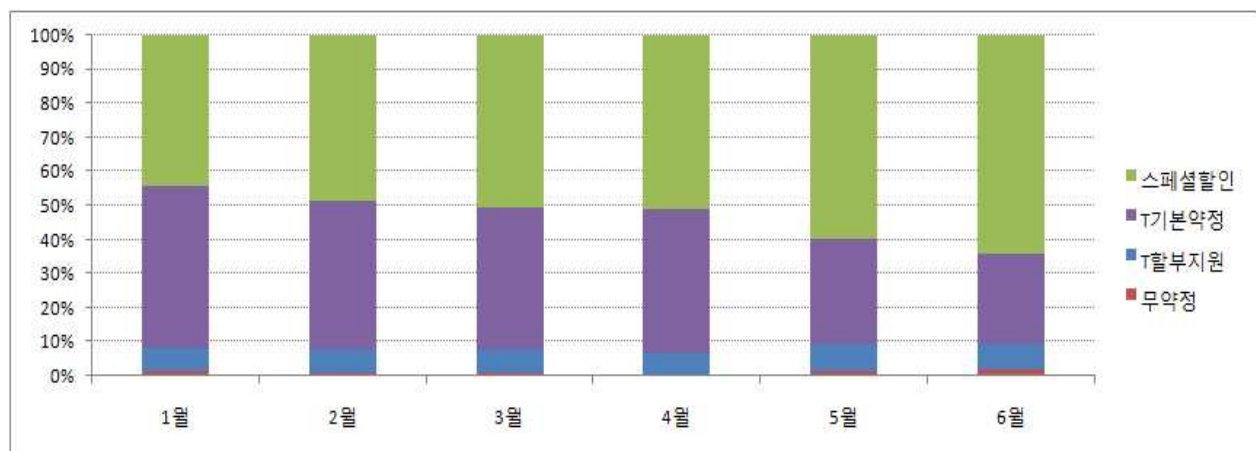
1~4월은 T기본약정이 40%이상을 점유하였으나, 5월 이후에는 31.3% → 26.7%로 그 비중이 점차 축소된 반면,

스페셜 할인은 1월(44.3%)에서 6월(64.0%)까지 지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되었고, 특히 갤럭시 S2 출시의 영향으로 4월 대비 5월 비중 확대가 두드러졌다(51.1% → 59.5%).

〈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판매 비중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체
스페셜할인	13,229 (44.3%)	15,937 (48.6%)	19,257 (50.4%)	17,501 (51.1%)	20,074 (59.5%)	20,620 (64.0%)	106,618 (53.0%)
T기본약정	14,199 (47.6%)	14,293 (43.6%)	15,976 (41.8%)	14,478 (42.3%)	10,572 (31.3%)	8,590 (26.7%)	78,108 (38.9%)
T할부지원	2,026 (6.8%)	2,212 (6.7%)	2,575 (6.7%)	2,147 (6.3%)	2,652 (7.9%)	2,351 (7.3%)	13,963 (6.9%)
무약정	380 (1.3%)	375 (1.1%)	399 (1.0%)	117 (0.3%)	439 (1.3%)	670 (2.1%)	2,380 (1.2%)



보조금 수준은 T기본약정(32.6만원)이 스페셜할인(23.6만원)보다 높은 반면, 평균 출고가는 T기본약정(54.7만원)이 스페셜할인(82.9만원)보다 34% 낮게 나타났다.

〈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평균 출고가 및 보조금 〉

(단위 : 원)

	T기본약정	스페셜할인	T할부지원	무약정	전체
출고가	547,325	829,114	784,460	565,917	791,974
보조금	326,244	236,156	289,859	51,161	272,691
보조율	59.6%	28.5%	37.0%	9.0%	34.4%

아울러, T기본약정은 전체 판매건수 중 스마트폰 비중이 9.9%에 불과하나, 스페셜할인은 96.3%에 달하였다.

〈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스마트폰 판매 비중 〉

(단위 : 원)

구분	T기본약정	스페셜할인	무약정	T할부지원	합계
전체 판매대수	78,108	106,618	2,380	13,963	201,069
스마트폰 판매대수	7,729	102,722	1,111	11,103	122,665
스마트폰 비중	9.9%	96.3%	46.7%	79.5%	61.0%

즉, T기본약정은 중·저가대의 일반 휴대전화에 주로 적용되면서, 약정의 보조금과 결합하여 소위 “공짜폰” 판매에 활용되는 반면,

스페셜할인은 고가의 스마트폰에 주로 적용되고, 요금할인이 일정 부분 보조금을 대체하는 관계로 보조금 수준은 다른 지급유형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특히, 5·6월은 번호이동 가입자수나 마케팅비가 증가하는 등 시장 과열이 심화되었으나, 갤럭시 S2 출시 이후 주로 스마트폰과 연계된 스페셜 할인 비중이 증가하면서 평균 보조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 ⑤ 단말기 유형에 따른 보조금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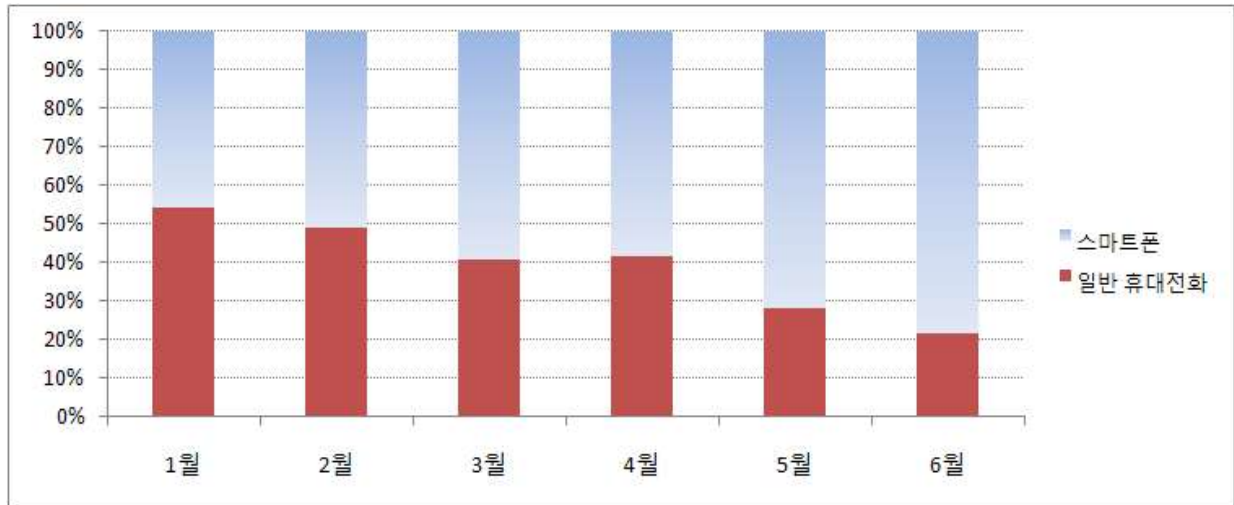
조사대상 건수의 경우 동 기간 중 1월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전화보다 더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갤럭시 S2 출시의 영향으로 4월 대비 5월은 58.3%에서 7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전화 판매 비중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체
스마트폰	13,681 (45.9%)	16,760 (51.1%)	22,653 (59.3%)	19,975 (58.3%)	24,277 (72.0%)	25,319 (78.6%)	122,665 (61.0%)
일반 휴대전화	16,153 (54.1%)	16,057 (48.9%)	15,554 (40.7%)	14,268 (41.7%)	9,460 (28.0%)	6,912 (21.4%)	78,404 (39.0%)
전체	29,834	32,817	38,207	34,243	33,737	32,231	201,06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은 요금할인 위주의 스페셜할인 방식으로 판매되어 평균 보조금과 보조율(25.3만원, 30.3%)이 전체 평균(27.2만원, 34.4%)에 미치지 못하나,

일반 휴대전화는 단말기 자체 할인에 집중하는 T기본약정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평균 보조금과 보조율(30.2만원, 54.9%)이 스마트폰보다 높게 나타났다.

〈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전화 보조금 및 보조율 〉

(단위 : 원)

구분	개수	출고가	보조금	보조율
스마트폰	122,665	837,410	253,621	30.3%
일반 휴대전화	78,404	550,942	302,527	54.9%
전체	201,069	791,974	272,691	34.4%

〈 ⑥ 보조금 차별의 정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기변경보다는 신규 가입자, 스페셜할인보다는 T기본약정 단말기 구매자, 스마트폰 구매자보다는 일반 휴대전화 구매자가 통상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바,

같은 가입형태·같은 지급방식으로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이용자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 차별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T기본약정과 스페셜할인 각각의 판매량 상위 5개 단말기의 보조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T기본약정으로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신규 가입자간에도 최대 60만원, 기기변경 가입자간에는 최대 51.1만원의 보조금 차이가 발생하였고 (SHW-A200S(노리F), 출고가 59.9만원),

〈 피심인 판매량 상위 5개 단말기 보조금 차이(T기본약정) 〉

(단위 : 원)

모델	출고가	가입유형	보 조 금				
			평균	보조율	최대	최소	차이
SHW-A240S (와이즈 모던)	473,000	신규	288,053	60.9%	512,600	23,000	489,600
		기기변경	137,808	29.1%	379,000	9,000	370,000
SHW-A130S (WiFi 폴더)	455,400	신규	280,397	61.6%	495,000	42,400	452,600
		기기변경	190,474	41.8%	405,400	20,000	385,400
SCH-W930 (코비F)	374,000 ~528,000	신규	327,959	68.0%	528,800	73,000	455,800
		기기변경	119,025	24.7%	284,000	9,000	275,000
LG-SH860 (와인폰3)	478,500	신규	300,061	62.7%	479,300	28,500	450,800
		기기변경	136,369	28.5%	428,500	20,000	408,500
SHW-A200S (노리F)	599,500	신규	397,682	66.3%	639,900	39,500	600,400
		기기변경	145,372	24.2%	520,300	9,000	511,300

스페셜할인 방식으로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신규 가입자간에도 최대 109.5만원, 기기변경 가입자간에는 최대 104.7만원의 보조금 차이가 발생하였다(LG-SU660(옵티머스2X), 출고가 94.2만원).

〈 피심인 판매량 상위 5개 단말기 보조금 차이(스페셜할인) 〉

(단위 : 원)

모델	출고가	가입유형	보 조 금				
			평균	보조율	최대	최소	차이
SHW-M110S (갤럭시S)	814,000 ~949,300	신규	273,932	30.2%	1,060,800	49,300	1,011,500
		기기변경	234,735	25.9%	1,000,800	5,700	995,100
SHW-M250S (갤럭시S2)	847,000	신규	154,451	18.2%	846,960	0	846,960
		기기변경	146,506	17.3%	847,000	0	847,000
LG-SU660 (옵티머스2X)	942,400	신규	287,614	30.5%	1,095,000	0	1,095,000
		기기변경	236,094	25.1%	1,047,600	0	1,047,600
IPHONE4 16G (아이폰 4)	814,000	신규	133,142	16.4%	621,200	0	621,200
		기기변경	124,929	15.3%	960,800	0	960,800
SHW-M190S (갤럭시S 호핀)	825,000 ~949,300	신규	259,522	29.1%	905,100	29,500	875,600
		기기변경	218,626	24.6%	1,010,800	0	1,010,800

3. 위법성 판단

가.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3] V. 5호 가목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3] V.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위법성 판단기준

〈 ① 개 요 〉

피심인은 구매시기·가입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고, 차별로 인하여 혜택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 집단 내에서도 최소 0원~최대 109.5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일부 이용자의 편익마저 감소되고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차별 행위가 이용자의 편익과 이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이용자간 차별의 정도가 비용 또는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 ② 구체적 판단기준 〉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³⁾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3) ’09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1개월, KT는 20개월, LGU+는 19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다. 위법성 판단

< ① 27만원 초과건수 등 >

위 기준에 의할 때 피심인의 조사대상 보조금 지급건 201,069건 중 27만원을 초과하여 부당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수준에 해당하는 건수는 87,111건(43.3%)이다.

한편, 조사대상 건 중 개통일 기준으로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155개 기종 중 SCH-C330, LG-SV390 등 64개 기종(판매건수는 12,827건)이다.

< ② 유형별 위반 정도 >

위반 정도를 기간,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약정보조금 지급방식(T기본약정/스페셜할인 등), 단말기 유형(스마트폰/일반폰) 별로 분석하였다.

월별로는 1·2월 위반율이 48.2%·47.4%로 제일 높은 반면, 3~6월은 조사대상 기간 평균 위반율 40%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4월 이후 38.9% → 36.4% → 33.2%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갤럭시 S2를 제외할 경우 5·6월 위반율은 48.5%·45.7%로서 1·2월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이후 위반율이 낮아진 것은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월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건수(위반율)
1월	29,834	1,190 (4.0%)	676,674	311,654	15,141 (50.8%)	14,386 (48.2%)
2월	32,817	3,052 (9.3%)	710,522	304,677	17,189 (52.4%)	15,571 (47.4%)
3월	38,207	3,262 (8.5%)	717,456	272,348	15,955 (41.8%)	14,239 (37.3%)
4월	34,243	2,600 (7.6%)	707,114	269,468	14,604 (42.6%)	13,335 (38.9%)
5월	33,737	1,486 (4.4%)	734,642	251,341	13,032 (38.6%)	12,270 (36.4%)
6월	32,231	1,237 (3.8%)	752,696	230,239	11,190 (34.7%)	10,691 (33.2%)
합계	201,069	12,827 (6.4%)	717,045	272,691	87,111 (43.3%)	80,492 (40.0%)

가입형태별로는 신규가 51.9%*(번호이동 신규는 49.1%, 일반신규는 53.9%), 기기 변경은 22.9%로 신규 가입자의 위반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재고 단말기를 제외한 비율

신규가입의 경우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건은 전체 신규가입 건수 118,655건 중 62,496건(52.7%)이고, 이중 재고 단말기를 제외한 위반건수는 61,601건(51.9%)인 반면,

기기변경의 경우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건은 전체 기기변경 82,414건 중 24,615건(29.9%)이나, 이중 재고 단말기를 제외한 위반 건수는 18,891건(22.9%)으로 재고 소진 목적의 보조금 지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였다.

〈 가입유형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건수(위반율)*
신규	118,655	1,606 (1.4%)	720,117	300,619	62,496 (52.7%)	61,601 (51.9%)
일반신규	69,218	984 (1.4%)	694,673	303,785	37,867 (54.7%)	37,314 (53.9%)
번호이동	49,437	622 (1.3%)	755,741	296,188	24,629 (49.8%)	24,287 (49.1%)
기기변경	82,414	11,221 (13.6%)	712,622	232,482	24,615 (29.9%)	18,891 (22.9%)
합계	201,069	12,827 (6.4%)	717,045	272,691	87,111 (43.3%)	80,492 (40.0%)

보조금 지급방식별로는 T기본약정이 78,108건 중 41,841건(53.6%)으로 높은 위반율을 보인 반면, 스페셜할인은 106,818건 중 32,966건(30.9%)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위반율을 보였다.

〈 보조금 지급방식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위반율)
T기본약정	78,108	12,304 (15.8%)	530,264	326,244	48,373 (61.9%)	41,841 (53.6%)
스페셜할인	106,618	275 (0.3%)	793,477	236,156	32,984 (30.9%)	32,966 (30.9%)
T할부지원	13,963	172 (1.2%)	683,909	289,859	5,538 (39.7%)	5,481 (39.3%)
무약정	2,380	76 (3.2%)	844,609	51,161	216 (9.1%)	204 (8.6%)
합계/평균	201,069	12,827 (6.4%)	717,045	272,691	87,111 (43.3%)	80,492 (40.0%)

단말기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위반율은 35.1%인 반면 일반 휴대전화는 47.8%로 일반 휴대전화가 오히려 높은 위반율을 보였고,

〈 단말기 유형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위반율)
스마트 폰	122,665	157 (0.1%)	841,630	253,621	43,157 (35.2%)	43,005 (35.1%)
일반 휴대전화	78,404	12,670 (16.2%)	522,128	302,527	43,954 (56.1%)	37,487 (47.8%)
합계/평균	201,069	12,827 (6.4%)	717,045	272,691	87,111 (43.3%)	80,492 (40.0%)

판매량 상위 10개 단말기 중 대표적 스마트폰인 아이폰4와 갤럭시S2는 위반율이 각각 2.1%, 5.3%에 불과하였다.

〈 기종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순번	구분	개수	출고가	보조금	위반건수	위반율
1	SHW-M110S (갤럭시S)	28,891	814,000 ~949,300	258,844	8,626	29.9%
2	SHW-M250S (갤럭시S2)	20,860	847,000	150,940	1,103	5.3%
3	LG-SU660 (옵티머스2X)	11,858	942,400	276,162	5,627	47.5%
4	IPHONE4 16G (아이폰4)	10,195	814,000	129,082	215	2.1%
5	SHW-M190S (갤럭시S 호핀)	7,320	825,000 ~949,300	249,269	1,970	26.9%
6	IM-A690S (미라크)	6,326	671,000 ~726,000	346,984	4,789	75.7%
7	IM-A730S (베가S)	5,374	885,500 ~929,500	275,096	2,466	45.9%
8	SHW-A240S (와이즈 모던)	4,606	473,000	261,708	1,811	39.3%
9	SHW-M240S (갤럭시 에이스)	4,576	699,600	262,560	1,840	40.2%
10	SHW-A130S (WiFi 폴더)	3,925	455,400	276,791	2,171	55.3%

◆ 예외 사유(재고 단말기 소진 목적의 보조금)까지 고려한 피심인의 최종 위반건수는 전체 조사건수 201,069건 중 80,492건(40.0%)

라.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3] V. 5호 가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의견

피심인은 자사가 정부의 시장 안정화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여타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하여는 선별적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을 차등 적용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경고한 바 있으며,

엄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5.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i)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 할인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ii)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iii)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시 주 또는 월 단위로 제출하고, (iv)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검증하고, 허위 입력시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v) 단말기 보조금 지급유형 중 가입비·할부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및 위약금 대납 등에 대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한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과징금 부과 상한액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I. 2호),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204억9천만원이다.

〈 ② 기준 과징금 :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10.9월 의결건 대비 위반율이 47%에서 40%로 다소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하되,

〈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 범위 〉

(단위 : 억원)

사업자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중대성 약함 (부과기준율 0.5% 이내)	중대 (부과기준율 0.5~1%)	매우 중대 (부과기준율 1~2.5%)
SKT	26,937	134.6 이내	134.6 ~ 269.3	269.3 ~ 673.4

부과 기준율은 재발한 점을 고려하여 '10.9월 의결건의 0.25%(중대성 약함 상한액의 50%)에서 0.3%(상한액의 60%)로 높여 부과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SKT의 기준 과징금은 80억8천만원이다.

나. 과징금의 결정

이상의 기준 과징금에 대해 영업 행태, 조사협조 여부 및 시정명령 이행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피심인이 조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전부 공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가입신청 시 이용계약서에 단말기의 출고가 및 판매가를 기재하도록 하는 작년 9월 시정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 기준 과징금에서 15%를 감경한 68억6천만원으로 결정한다.

7.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1. 9. 19.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홍 성 규 (인)
	위 원	김 충 식 (인)
	위 원	신 용 섭 (인)
	위 원	양 문 석 (인)